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7. 1. 25

나. 회부일자 : '97. 1. 25

3. 제안이유

- 1997. 1. 1일자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필요

4. 주요골자

- 국가직 공무원 → 지방직 공무원 : 102명
- 2차 조직개편시 증원된 5명 감축 : 의회사무처 정원 의결 (△6 → △1)에 따른 증원된 5명 감축
 - 도 본청 977 → 981명 (지방직 전환 9, 2차 조직개편시 의회사무처 증원분 감축)
 - 직속기관 1,003 → 1,095명 (공무원교육원 2명, 농촌진흥원 90명)
 - 증평출장소 232 → 233명 (소장 1명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할 국가공무원중 102명을 '97. 1. 1일자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'96. 12월 2차 조직개편시 의회사무처 5명 증원분을 감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

- 도 본청 977명에서 981명으로
- 직속기관 1,003명에서 1,095명으로
- 증평출장소 232명에서 233명으로 총 97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정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